

과업지시서

1. 과업개요

- 과업명 : 유스내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
- 과업내용 : 유스내비 시스템 유지·보수
- 연비용 : 33,660,000원(금 삼천삼백육십육만원)
- 과업기간 : 2025. 1.01 ~ 2025.12.31.(12개월)

2. 과업내용

코로케이션 제공

-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임대

관리 대상

- . 코로케이션 서버.
- . MF2-800 VPN
- . 웹방화벽

유지·보수 내용

- . 웹취약점 점검 제공 (도메인 5개 / 연)
- . 24시간 모니터링 (포트 모니터링)
- . 서버 하드웨어 장애시 임시서버 제공 (3주)
- . Windows server (avast 백신 제공)
- .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
(포트 및 하드웨어 상태 확인)
- . Alpha SSL 제공(2개 도메인 / 연, 2차도메인 미포함)
- . DDoS 임시대피존 제공.

-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

○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

○ 장애 발생 시 즉각 정상화 조치 및 대안 제시

- 유지·보수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
- 장애 정도가 미비하여 시스템 중단 위험이 없는 장애로 판단된 경우에는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상화 시점을 조정할 수 있음
-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- 장애 조치 후에는 증상, 원인,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 용역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추후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

□ 과업 세부내용

○ 코로케이션

- 시스템에 운영되는 모든 환경과 각종 툴(Tool)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이해와 지원
 -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리
 - 24시간 모니터링
 - 서버 장애를 대비한 임시서버제공
 -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

○ 보안서비스제공.

- 웹취약점 점검 서비스 제공
- Alpha SSL 인증서 제공.
- DDoS 임시 대피존 제공.
- windows server를 위한 백신 서비스 제공
- VPN 서비스 설정 및 관리 제공.
- 보안조치
 - 자료보안대책 : 필요 자료는 보안관리의 중요도 별로 등급으로 분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.
 - 장비, 보안대책 :
 - ① 서울시청소년미디어센터 지침에 맞춰 서버 기본 보안설정 이상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

서버설치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물리적으로 적절한 상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.

② 원격접속 보안 및 접근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이행한다.

③ 시스템 불법접속 및 바이러스, 해킹, 서버 장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.

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,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.

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,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

⑥ 사업자는 물리적, 관리적,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- 누출금지 대상 :

-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·외부 IP주소 현황
-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
- 사용자계정·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,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물
-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
-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
- 침입차단시스템·방지시스템(IPS)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·스위치 등 네트워크장 비 설정 정보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,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
- 그 밖에 센터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

-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:

- 부정당업자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부정당 업자로 등록된 경우이다.
- 부정당업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후 부정당업체로 확인될 경우 바로 계약해지 가능하며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.
- 계약이행중 부정당업체로 확인될 경우 2년간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모든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.

- 사업자는 미디어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[별표1]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[별표2]의 보안 위약금을 미디어센터에 납부한다.
-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미디어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.

-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:

구분	위 규 사 항	처 리 기 준
심 각	1.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.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,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. 개인정보·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. 비공개 항공사진·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.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.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.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.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참여 제한 ○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○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○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
중 대	1.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.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.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·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. 개인정보·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.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. 사무실·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.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.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. 통제구역 내 장비·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.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.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,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. 웹하드·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. 개발·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.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.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.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○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○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

	<p>사.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</p> <p>아.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(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)</p>	
보 통	<p>1. 기관 제공 중요정책·민감 자료 관리 소홀</p> <p>가. 주요 현안·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</p> <p>나. 정책·현안자료를 휴지통·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</p> <p>2.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</p> <p>가. 캐비닛·서류함·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</p> <p>나.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</p> <p>3. 보호구역 관리 소홀</p> <p>가. 통제·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</p> <p>나.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</p> <p>4.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</p> <p>가.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·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</p> <p>나.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</p> <p>다.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(CD, USB 등)를 꽂아 놓고 퇴근</p> <p>라. 부팅·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“1111”등 단순숫자 부여</p> <p>마.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</p> <p>바.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</p>	<p>○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</p> <p>○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/경위서 징구</p> <p>○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</p>
경 미	<p>1.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</p> <p>가.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, 퇴근</p> <p>나. 복사기·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</p> <p>2.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</p> <p>가.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</p> <p>나. 경보·보안장치 작동 불량</p> <p>3.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</p> <p>가.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</p> <p>나.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</p>	<p>○ 위규자 서면·구두 경고 등 문책</p> <p>○ 위규자 사유서/경위서 징구</p>

○ 홈페이지 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

- 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및 복구 작업 수행

□ 준수사항

- 본 용역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관련 표준 또는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
 -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(행정자치부)
 -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 및 웹 표준(W3C)
 -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(국가사이버안전센터, WCMS 2.5.0)
 -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(행정자치부) 등
 - 기타 관련 법규 및 지침

□ 기술지원 및 이전

-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반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
 -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, 홈페이지 웹 서비스 변경 관련 기술 지원 등

3. 제출서류 및 산출물 관리

□ 용역수행업체는 계약 후 10 영업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- 참여 인력 이력 각 1부(자유 양식)
- 참여 인력별 보안서약서 각 1부(자유 양식, 자필 서명 필수)

4. 행정사항

□ 용역수행 및 업무추진

- 과업지시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후에라도 용역수행업체에게 총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추가적인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수정 제안서 및 자료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용역수행업체는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요청할 시 용역 진행상황을 서면 혹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, 완료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발주기관의 용역 담당자는 필요 시 용역수행업체에 착수·중간·결과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
- 발주기관에 의해 용역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

주기관의 용역담당자는 총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설계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

□ 성과물 납품 및 사후관리

- 용역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용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지시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성과물 일체 및 작업물의 원본 일체를 납품하고,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기관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자료를 요청할 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
- 용역수행업체는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·정리한 자료 일체, 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한 사항을 발주기관 용역 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시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용역수행업체는 향후 3년 간 우리 협회 사업에 입찰할 수 없음
- 용역수행업체는 과업 추진 시 제반 법령,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용역수행 중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한 쌍방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
- 용역수행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또는 부대 업무에 대한 용역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
- 과업지시서, 용역수행계획서, 계약서 등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용역수행업체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시 용역 담당자가 추가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이때의 소요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하여야 함
-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.

5. 산출내역서

□ 총경비

- 총경비는 홈페이지 호스팅비용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. 단, 과업계약 이전에 홈페이지 호스팅에 소요된 비용은 소급하여 적용한다.
- 홈페이지 호스팅비용
- 홈페이지 유지·관리비용